

[공고번호 : 전북테크노파크 제2026-0071호]

「2026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고창 특화 G-푸드 기반 식품기업 육성사업(1차년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고창군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고창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고창 특화 자원 기반 식품기업 G-푸드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구축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1), 2) 모두 해당되어야함.
 - 1) 고창군 소재 중소기업(본자, 지사, 기업부설연구소, 공장 등록 기준)
 - 2) 장어(바지락 등 수산물), 복분자(블루베리 등 베리류), 고구마 등 해당 특화자원 전·후방 산업분야 관련 기업

※단, 패키지 지원(전주기 맞춤형 지원, 생태계 활성화 지원)의 경우,

1), 2) 조건과 더불어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 전주기 맞춤형 지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에 따라 해당되는 유형으로 신청 가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돌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수행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

○ 생태계 활성화 지원: 공고일 기준 고창에 거주하는 청년(18세 이상~45세이하) 기업

○ (지원규모) 총 약 4.9억원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총 7개

지원 유형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최대지원금 (천원)	지원 규모	지원 기관명
생산성 향상 지원	공정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장비 개선 (안전, 노후 등), 품질 경쟁력 확보,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한 개선지원 - 효율적 생산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 scale-up 지원(자동화 등) - 생산장비의 안전장치 개선 ※단순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 등 지원 불가 ※스마트 팩토리, AI도입 활용 우대	30,000	2건	(재)전북 테크노파크
사업화 지원	디자인 개발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패키지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제품 고급화 및 디자인 개선 	10,000	9건	(재)고창 식품산업 연구원
	시제품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자원 기반 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제품 생산 관련 원부자재 지원 	15,000	5건	
	시험 분석·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품질 특성, 9대영양성분 분석, 자가품질검사, 안전성검사 등 	1,500	5건	
	효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자원 기반 제품 운료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 기능성 효능평가 등 	15,000	1건	
패키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성장단계 맞춤형 (패키지)지원 (돌움→도약→선도) 	40,000	4건	(재)고창 식품산업 연구원
	생태계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업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40,000	2건	

※지원프로그램별 복수지원 가능(기업당 최대 연 9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단,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타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불가

※기업 수요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추후,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박람회 지원 예정 등을 포함하여 기업당 최대 연9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

※기업지원금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부가세는 별도, 기업 부담)

- **(기업부담금)** 기업지원금의 5~10% 이상 현금 자부담
 - `25년 매출액 기준 :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 부담
 - ※ 2025년 기준 기업매출액 10억 원 미만 : 지원금의 5% 이상
 - ex) 10,000천원(지원금) + 500천원(기업부담금) = 10,500천원(총사업비/부가세 별도)
 - ※ 2025년 기준 기업매출액 10억 원 이상 : 지원금의 10% 이상
 - ex) 10,000천원(지원금) + 1,000천원(기업부담금) = 11,000천원(총사업비/부가세 별도)
- 단, 생산성향상(공정개선) 지원은 50% 부담
 - ex) 지원금 최대 3천만원+자부담(50%)1.5천만원=4.5천만원(총사업비/부가세 별도)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3. 20.(월) ~ 4. 10.(금)
- **(접수기간)** 2026. 3. 20.(월) ~ 4. 1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시스템(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 · 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SMTECH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이하 RMS
 - ※기관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첨] 기업지원업 관리시스템(신청기업용) 매뉴얼' 참고
 - ※첨부파일명은 반드시 하기 예시와 같이 해당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
 - ex) (기업명) (지원프로그램명)_고창 특화 G-푸드 기반 식품기업 육성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원마감 당일에는 문의가 많아 담당자 연결 및 사이트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①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중복지원 금지 협약 및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2025)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기간 내 `25년도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 (추후, 2025년 재무제표 제출 요구 예정)

구분	제출서류 목록		
	⑤ 신청 제출자료 1-1. 견적서(VAT 포함) 1-2. 비교 견적서(VAT 포함) 등 산출내역 증빙 자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1. 4-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씩) 사본(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공정개선' 지원프로그램 신청시, '5.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필수 제출 ※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지원 프로그램 신청시, 공급기업 또한 ④2~5 필수 제출 (또한, ①, ②, ③ 양식에 수혜기업과 공급기업 함께 작성 필요)		
추가 제출	디자인지원 공급기업 (디자인기업)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증빙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디자인 전문인력 보유현황 증빙	디자인 전문인력 증빙자료(택1)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 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선택 제출	기타증빙	① 6차산업인증기업 증빙서류 ② 전문 유통·판매업 신고증 ③ 우대가점 증빙서류(수출증빙, 특허 등 우대가점 항목 해당 서류) ④ 기업의 우수함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제반 서류	

※패키지지원의 경우, 추후 K-TOP 평가 시스템 이용을 위한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 할 수 있음.

○ 추진절차 및 일정계획(안)

- 디자인 개발 및 개선 : 협약체결일 ~ 2026. 8. 31.
- 그 외 프로그램 : 협약체결일 ~ 2026. 10. 31.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선정평가	⇨	결과통보 및 협약
3. 20 ~		3~4월		4월		4월		4월		5월 초

- ※ 지원사업 수행 중 모니터링 및 점검 진행 예정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
 - 신청자격 부적합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

- 지원대상은 60점 이상 득점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예정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방법(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예비순위제도 운영 : 선정기업이 해당사업을 포기(중도포기 포함)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 기준점수 60점 이상의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필요성 (40)	· 사업 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20
	·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사업 추진 타당성 (35)	· 추진 내용, 범위의 적정성	10
	·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 지원제품의 사업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가능성	15
	· 고용 및 매출 증대	10
합계(a)		100
우대가점(b)		3
a+b		103

○ **(우대가점)** 아래 항목 해당 시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구분	우대가점 기준	증빙서류	가점
1	고창군 소재 청년기업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 (1980. 3. 21. ~ 2008. 3. 20.)	대표자 생년월일 증빙가능서류	3점
2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최종평가확인서 (SMTECH)	3점
3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보유 (확인 및 발급문의 : 중소기업복지플랫폼(1599-9510))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점
4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보유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2점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 인증 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점

6	지역 내(고창) 공급기관(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 (공급기관(업)을 활용한 간접지원 형태 프로그램 한정)	공급기관 사업자등록증	1점
7	제품 구매확약서, 납품계약서	지원예정 제품의 타업체(기관) 납품 및 구매확약서	3점
8	고창 특화자원 원료 3종 이상 활용	원산지 증명서	3점
9	기술보유성 ※상표등록 및 디자인등록 제외	특허등록증	2점
10	수출실적 ※3년 이내 1만불 이상	수출실적증명서	2점

4.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사전 제외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① 부도업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③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신용등급'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3년 부채비율 초과가 시설·설비 투자 등 유형자산 취득에 기인함을 입증하고, 평가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때 자금의 출처 및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최근 연도 결산(2025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2024년도,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
- ⑧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과제의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⑨ **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당해연도 사업신청 제한
- 지원프로그램에는 기업부담금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기업 부담금 사용 증빙(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5. 이의신청

-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 완료 후, 1회 가능

가.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나.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등에 이의가 있는 때

3. 이의신청의 방법

가.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또는 통보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기한 내, 1회에 한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선정·단계·최종·특별평가, 기술료 징수 등 :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2) 사업비 정산 결과 :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이의신청은 수행기관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에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재부가금

- ◆ 허위청구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 과다청구 (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 ◆ 목적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6.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기관명	구분	프로그램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재)전북 테크노파크	생산성 향상	생산라인 공정개선	권종대	063-839-0214	jdkwon@jbtp.or.kr
		디자인 개발 및 개선	양아현	063-839-0212	yang@jbtp.or.kr
(재)고창 식품산업 연구원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김법원	063-560-5181	bobwon@hanmail.net
		시험분석·인증			
		효능평가			
	전주기 맞춤형 지원				
패키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시스템 관련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가입/기업등록, RMS 과제 신청 오류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번없이)